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방사선 취급자 정기검사 제도 총괄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며,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또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사무운영서기보)을 기타 일반직군(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한시정원

제12조(한시정원)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 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둔다.

별표 1 총계 “122”를 “124”로 하고, 일반직 계 “121”을 “12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39”를 “40”으로 하고, 운전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를 신설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사진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5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운영직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사무운영서기보 정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0년 4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정원을 대체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2조 관련)

제12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3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감사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 산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 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 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연구 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 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 한시정원</u> <u>제12조(한시정원) 원자력안전분야</u> <u>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u> <u>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u> <u>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u> <u>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u>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3월</u> <u>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u> <u>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둔다.</u>

신 · 구 정원 대비표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22</u>	<u>124</u>	+2
·	·	·	
·	·	·	
일반직 계	<u>121</u>	<u>123</u>	+2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 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연구관	<u>39</u>	<u>40</u>	+1
·	·	·	
·	·	·	
운전주사보	1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u>			
<u>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u>	<u><신 설></u>	<u>1</u>	+1
<u>전산서기보</u>			
·	·	·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전문경력관	1		
나군(홍보 · 사진 담당)			
<u>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u>	<u><신 설></u>	<u>1</u>	+1